

#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24
----------	-----

2019년 4월 30일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채인묵 의원

나. 발의일자 : 2019년 3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3일

라. 상정결과 :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
(2019년 4월 23일, 상정·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채인묵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,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-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 또한 “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

경우”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”로 개정한 바 있음.

- 이에 따라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“장애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며 문맥이 어색한 문구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“장애” 표현을 수정함(안 제22조제2호)

## 다. 참고사항

- (1) 관계법령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
- (2)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(3) 기 타: 해당없음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경욱)

- 동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」에 의해 운영되는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“장애”라는 표현을 수정하고, 문맥이 어색한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(찬성자 11명)이 발의하였음.

- 현행 조례 제22조는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위원 해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, 이 중 제2호 “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”의 문구에 ‘장애’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.
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(동법 제6조)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편의에 대한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.

###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6조(차별금지)**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또한 우리나라도 비준국으로 포함되어 있는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<sup>1)</sup> 제29조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

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,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권장하고 있고,

### UN 「장애인권리협약」

제29조(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)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,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.

②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,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

1. 국가의 공적·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
2. 국제적, 국내적,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

2015년 12월 31일, 국회 운영위원회는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중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퇴직 요건을 규정한 제8조의 “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”라는 문구에서 ‘장애’라는 표현이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”라고 변경한 바

###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개정 사항(2015.12.31. 국회 운영위원회)

개 정 전	개 정 후
제8조(위원의 신분 보장)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 다	제8조(위원의 신분 보장)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 다

1)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(2008.05.03.). 2012년 12월 기준 비준국 126개국.

개 정 전	개 정 후
<p>만, 위원이 <u>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</u>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만, 위원이 <u>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</u>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.</p>

심신의 장애를 사유로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위원을 해촉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동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 이러한 사유에 따라 ‘장애’ 표현의 변경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와 부정적 인식을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됨.

- 한편 역사도시서울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는 동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, 상위법령 위배 및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동의한다고 밝힘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채인묵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52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채인묵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유 용, 이태성, 이성배, 이광호,  
김경우, 이현찬, 김정환, 김소양,  
권영희, 임종국, 김동식 의원 (11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,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-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 또한 “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”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”로 개정한 바 있음.
- 이에 따라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“장애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며 문맥이 어색한 문구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“장애” 표현을 수정함(안 제22조제2호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 
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##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시민의 권리) 시민은 역사도시의 조성·진흥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·보존·활용에 관한 정책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혜택의 향유와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

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민의 권리) 시민은 역사도시의 조성·진흥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·보존·활용에 관한 정책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을 받지 <u>아니하고 그 혜택을 향유하며</u>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</p>	<p>제3조(시민의 권리) 시민은 역사도시의 조성·진흥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·보존·활용에 관한 정책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을 받지 <u>아니하며 그 혜택의 향유와</u>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</p>
<p>제22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<u>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</u></li> <li>3. ~ 4.(생략)</li> </ol>	<p>제22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<u>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</li> <li>3. ~ 4.(현행과 같음)</li> </ol>